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 관련 건설업계 탄원

2015. 11. 26

상위 25개 건설업체 일동

존경하는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님!

어려운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 아울러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건설·조선업종 등 수주산업의 회계처리 논란으로 회계 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을 발표('15.10.28) 하였습니다.

진행기준 회계처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나, 주요사업장별 중요정보 공시확대 및 핵심감사제 도입등의 내용에 대하여 건설업체는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건설시장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건설업체의 해외진출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유가로 인한 발주량 감소와 중국·일본과의 치열한 경쟁은 우리 건설업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발주처의 엄격한 공사원가 관리로 수익성 확보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건설업체의 환경이 이러한데 수주산업의 회계투명성을 위한 주요사업장별 공시확대와 핵심감사제 도입은 국내업체의 원가정보가 그대로 노출돼 해외 업체와의 수주경쟁과 공사수행에서 불리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결국 건설산업 위축과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한 수주산업에만 강화된 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기업경영활동을 제한할 뿐 아니라 타산업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위배되는 심각한 문제점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건설업체는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방안이 기업의 경쟁력 저하를 최소화 하면서 투자자 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업체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① 주요사업장별 중요정보 공시확대*로 발주자, 경쟁업체에 원가정보가 노출돼 해외공사 ‘수주절벽’ 및 수익성악화의 우려가 큼니다.

* 총매출액의 5%이상 사업장별 진행률, 미청구공사, 총당금, 공사손익 변동분 등 공시

- **(발주자 입장)**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공사발주시 투입원가를 예정하여 산정하므로 직접적으로 원가율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시공사가 공시하는 미청구공사금액, 공사손익변동내역 등을 통하여 업체의 원가율 추정 가능
* 예시 1,2 참조

이에 발주자의 예정원가보다 업체의 투입원가가 낮다고 인식될 경우 계약금액 감액 요구 및 향후 동종 공사 발주시 계약금액을 낮춰 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설계변경등에 따른 증액요구시에도 **발주자에 대한 협상력 악화**

특히 해외공사 유사프로젝트에 대한 국가별 원가율 차이에 대하여 원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에서는 **공사비 과다지급 논란** 등의 정치적 이슈로까지 번질 수 있는 문제

아울러 발주처에서 계약서에 비밀유지 의무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위반할 시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할 수 도 있음

또한, 다른 프로젝트와 비교하여 해당 발주자의 대금지급조건이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미청구, 초과청구공사 비교) **대금지급 조건 변경요구 가능성이 높고**

사업장별 **총당금 공시**는 발주자로 하여금 해당 채권의 포기로 간주토록 하여 공사대금 미지급 가능성 발생 등 발주자에 대한 협상력 저하 초래

- **(경쟁사 입장)** 해당 건설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들은 해당 공사 원가 산출 등의 경험을 통해 대략적인 정보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미청구공사 등 공시정보로 수주업체의 공사원가 추정 가능

향후 타공사 수주 경쟁시 경쟁업체의 원가 정보를 이용하여 투찰가액 조정, 계약조건 등에 있어서 발주자에게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여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져 수주기회를 상실하게 돼 해외공사의 경우 국가경쟁력 저하

〈건의사항〉 주요사업장별 중요정보 공시→ 부문별 중요정보 공시

예시 1 미청구공사, 총당금 공시에 따른 영향

▪ 업체 공시내역

- 프로젝트별 계약금액 10,000 * 업체산정 예정원가 9,000(원가율 90%)

프로젝트	연도	진행률 (%)	채권잔액		대손충당금		공사손실 충당금
			청구 (누적)	미청구 (초과청구)	청구	미청구	
A국 플랜트	01년	30	-	3,000			
	02년	70	8,000	(Δ1,000)			
	03년	100	9,500	500		Δ500	
B국 플랜트	01년	25	2,000	500			
	02년	70	4,000	3,000			
	03년	100	10,000	-			

○ A국 발주자 입장

- B국 프로젝트와 비교해 대금지급이 업체에 유리하다고 인지하여 대금지급조건 변경요구 가능성 커짐(02년에 1,000 초과청구 발생)
- 대손충당금 500에 대하여 발주자는 업체의 채권 포기로 간주할 가능성
- 발주자는 예정원가를 9,500으로 산정하여 원가율 95% 예상, 01년에 업체의 투입원가 2,700로 예상
 - 발주자가 계산한 미청구 공사 : $2,842 = 2,700 \div 95\%$
 - 업체 공시내역 비교시 원가율 90% 추정 : $3,000 = 2,700 \div 90\%$
- ▶ 발주자의 예정원가율 95%보다 업체의 원가율 90%가 낮음을 인지하여 향후 계약금액 감액 요구 및 공사금액 증액 시 협상력 저하

○ 경쟁사 입장

- 경쟁사는 수주경쟁 했던 공사의 내역 등의 정보와 회사의 공시내역을 통해 미청구 공사 손익변동 등으로 원가율 추정 가능
- 결국 향후 수주경쟁시 더 나은 계약조건과 금액으로 수주가능성을 높일 수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업체는 수주기회 상실로 경쟁력 악화 초래

예시 2 공사손익 변동내역 공시에 따른 원가율 추정

구분	14년말	15년말	증감
계약고	1,000	1,000	
진행률	30%	70%	40%
공사손익 변동액			10

○ 15년 매출액

$$\cdot (1,000 \times 70\%) - (1,000 \times 30\%) = 400$$

○ 총손익 = 손익변동분 ÷ (당기진행률 - 전기진행률)

$$\cdot 10 \div (40\% - 30\%) = 100$$

※ 진행률이 100%일 때 총손익 산출가능

○ 원가율 : $1 - (\text{총손익} / \text{계약금액}) = 90\%$

$$\cdot 1 - (100 / 1,000) \times 100\% = 90\%$$

② 주요사업장의 분기단위 총예정원가 재평가 보고·공시(부문별 변동분)는 특히, 해외공사의 경우 수만 개에 이르는 공정별 원가산출로 과도한 업무부담이 발생합니다.

- 공사규모가 클수록 공정이 복잡해지는데 대형프로젝트가 많은 해외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5만~10만개에 달하는 공정을 매분기별로 재평가하여 문서로 보고·공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곤란
 - 공정별 원가산출에 소요되는 업무량이 상당한데, 이를 분기별로 재평가하여 내부감사위원회에 보고할 경우, 보고서와 별도로 각종 입증자료 작성 등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여 연간 상시적으로 회계보고만을 위해 추가팀을 만들어야 할 상황

**〈건의사항〉 분기별 총예정원가 재평가 보고·공시(부문별 변동분)
→ 연 간 총예정원가 재평가 보고·공시(부문별 변동분)**

③ 설익은 제도를 수주산업에만 우선하여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될 뿐 아니라 기업 경영활동을 심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 핵심감사제(Key Audit Matters)

- 핵심감사제는 회계인프라가 비교적 잘 갖추어진 EU 국가는 '1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EU 운영사례 등을 참고하여 도입 검토 중인 제도로
 - 동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검증없이 건설·조선등 수주산업에만 우선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부작용 발생시 기업에 막대한 피해 초래 가능성
 - 또한 회사의 기밀 노출 우려와 핵심감사내용에 대한 감사인/기업/제3자 와의 분쟁가능성 등 회계부서의 불안감 증폭 우려
- 수주산업에만 우선하여 도입하기 보다는 EU, 미국등 선진국의 운영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전체산업 도입시 적용

〈건의사항〉 핵심감사제 도입시기를 전산업 적용시점으로 연기

④ 충분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새로운 기준을 바로 적용한다면 혼란과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기준 도입에 따른 회사내부 절차 수립 및 시스템 정비 등을 고려한다면 경과기간 없이 바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
 -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하여 지배회사 및 종속회사(대기업의 경우 해외에 산재해 있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이를 위한 프로세스 수립·검증을 위한 시간 필요
- 개정(안)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2017년부터 적용 필요
 - 회계/공시/감사/감독 등 전 부분에서 회계제도를 정비·개선해야 하므로 내부검토, 회계시스템 개선 및 연관업무 정비 등 최소한의 경과 조치 필요
 - 동 방안의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등 실시 고려

〈건의사항〉 경과기간 도입 후 2017년부터 시행

참여업체 연명서

회 사 명	대 표 자	날 인
코오롱엔코빌 주식회사	윤 창근	
(주)한화건설	최광호	
한신공명 (주)	태 기 전	
(주) 환 양	환 증 영	
(주) 태영건설	이 재 규	
현대건설 (주)	정수현	
(주) 케이씨씨건설	정 몽 열	

참여업체 연명서

회 사 명	대 표 자	날 인
(주)한진중공업	이 만영	
현 대산업개발(주)	김재석	
에스케이건설(주)	조기행	
래림산업(주)	김종수	
(주)삼 호	추문석	
(주)포스코건설	황태현	
지이스건설(주)	임병용	

참여업체 연명서

회 사 명	대 표 자	날 인
삼성엔지니어링(주)	박 증 흥	
현대엔지니어링(주)	김 위 철	
(주) 대우건설	박 영 석	
두산건설(주)	이 병 화	
주식회사 한라	최 병 수	
롯데건설(주)	김 지 현	
삼성출산(주)	최 지 훈	

참여업체 연명서

회 사 명	대 표 자	날 인
신상용건설회사(주)	김식준	
두산중공업(주)	정지락	
동북건설(주)	김영진	
계룡건설산업(주)	한승구	